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제15조제1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삭제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5조 삭제)

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회신기간을 규정(안 제5조의3)

다.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함(안 제5조의4)

라. 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실태조사의 실시 기간 등을 구체화함(안 제5조의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없 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관계기관 간 협의)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으로부터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제5조의4(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 할인율 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의5(실태조사의 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이용 현황,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할인·판매·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관계기관 간 협의)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

<신 설>

<신 설>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제5조의4(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 할인율 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의5(실태조사의 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이용 현황,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955